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(위탁) 동의안 (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)

의 안 번 호 996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어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되는 주차장으로
- 나.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, 시설의 일부는 중랑구에 재위탁 관리하고자
- 다.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시 설 명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332

○ 시설규모 : 연면적 59,665 m²

계	평면복개 주차장	램 프	부대시설(판매시설 등)
59,665	44,560	4,644	10,461

- 주차장 시설 : 1,008면

▶ 공영주차장 567면, 부대시설(홈플러스) 부설주차장 441면

- 건축 시설물 : 10,461.17 m²

▶ 판매시설 9,876.17m², 관리실 19.50m², 기계실 등 565.5m²

○ 소 유 권 : 상부복개구조물(시), 유수지(구)

○ 사업시행 : 홈플러스 스토어즈(주)

○ 민자기간 : 1999. 9. 4. ~ 2019. 9. 3.(20년)



나. 주요 대행 업무

○ 대행기관 : 서울시설공단

○ 대행기간 : 2년 4개월('19. 9. 4. ~'21.12.31.)

- '16.12.30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('17.1.1.~'21.12.31)

대행인력: 3명(토목1, 전기1, 기계1)

- 유수지 복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판매시설 등 시설유지관리 인력 충원

ㅇ 대행업무

-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관리·운영 및 이용자 불편해소
- 주차장내 부대시설(판매시설)에 대한 임대차 업무
- 공영주차장 시설 제3자 민간위탁 실무업무
- 복개시설 및 주차장 시설의 안전관리, 유지관리 및 개보수
- 화재·수해 등 재난매뉴얼 작성 및 사고예방 등
- 공영주차장 운영·관리 제3자 위탁

- 대 상 : 면목유수지 주차장 1,008면 중 공영주차장 567면

- 위탁기관 : 중랑구(시설관리공단)

- 계약방법 : 협약

다.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면목
 유수지 복개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
- 공단의 사무실·상가 관리 노하우와 축적된 주차관리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며
- 판매시설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자치구(산하 공단)에 재위탁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9조

- 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조례에서 "위탁한다"고 규정한 경우
 - 2.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. 다만,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
 - 3.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
 - ④. 생략
 -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(6) ~ (7).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제10조

- 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 -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 - 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 - 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 - 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)
- ② ~ ③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19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예산 편성(인건비 기편성)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김희정(☎ 2133 - 2367)